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 기 창 의원 등 8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25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3. 제안이유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징수방법 변경(안 제3조)

- 현행 수입증지 → 개정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화폐, 전자결제 등

나. 수수료의 면제 변경(안 제4조)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 시험 및 검사 →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은 규정을 현실화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의 징부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여 민원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제1항 중 “제53조1항에 따라 산출”을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조문을 정비함.
- 제3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함.
-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일정 규모”를 “일정 규모”로, “충청북도내”를 “충청북도 내”로, “시공사 간”을 “시공사 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30% 이상”을 “3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0%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60%이상”을 각각 “60퍼센트 이상”으로 조문을 정비함.

1.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

- 제5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로 정비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8.18.~'21. 8.2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일부 미비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